

1. 개정이유
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에 규정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진료과목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,
 - 성매매 피해 관련 치료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하려는 것임.
- 또한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(별표 3)에 기재된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양성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인력배치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(제19조) 의료비 지원을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용에 한정된 것을,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용도 지원토록 개정
 - 아울러, “성병감염 검사 및 치료비용”도 “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”으로 개정
- (제7조, 별표3)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
 - 아울러,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종사자 수는 최소 기준임을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실시 예정

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강화 없음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포함한다)”를 “포함한다) 및 치료비용”으로 한다.

1. 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

7조 관련 별표3의 비고 4의 “1년간”을 “2년간”으로 하고,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5. 종사자수는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,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다.”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의료비의 지원 범위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9조(의료비의 지원 범위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<u>성병감염 여부의 진찰·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</u>	1. <u>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</u>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(초음파,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)	8. ----- ----- ----- 포 <u>함한다) 및 치료비용</u>

상담소등 종사자의 수(제7조 관련)

구분	지원시설				자활지원 센터	상담소
	8명 미만	8명 이상 15명 미만	15명 이상 20명 미만	20명 이상		
상담소등의 장	1	1	1	1	1	1
사무국장	—	—	1	1	—	—
상담원	1	3	4	5	2	3
직업훈련교사	—	—	—	—	2	—
사무원	—	1	1	1	1	1
조리원/세탁원	—	1	1	1	—	—
관리인	—	—	—	1	—	—
총계	2	6	8	10	6	5

※비고

1. 지원시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.
2.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,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.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등(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다)의 장은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.
4.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둔 경우에는 2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.
5. 종사자수는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,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다.